

2. 이사회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지침 변경 내용

현 행	변 경
<p>제9조 (부의사항)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②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직편제의 변경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과, 대학원 신설 및 폐지 • 특별 교육과정 신설 및 폐지 • 처 단위 이상의 행정조직 및 부속기관의 신설 및 폐지 정원운영계획(교원, 직원, 학생) 시설건립 기본계획(면적, 시기, 위치, 소요예산 등) 캠퍼스 마스터플랜 학생 납입금 및 장학정책 운영계획 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계획 시설건립 또는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기부금의 수증 (신설) <p>(신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타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 제도의 신설, 변경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제9조 (의결사항) ①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②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직편제의 변경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과, 대학원 신설 및 폐지 • 특별 교육과정 신설 및 폐지 • (삭제) 정원운영계획(교원, 직원, 학생) 시설건립 기본계획(면적, 시기, 위치, 소요예산 등) 캠퍼스 마스터플랜 (삭제) (삭제) (삭제)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(교직원 보수, 학생 납입금 및 장학정책 운영계획, 발전기금 모금계획 및 수증결과 포함) 교원인사 관련 주요제도 변경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p>제10조 (보고사항)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중장기발전계획(학사운영, 시설, 연구, 재정운영계획등) 연간 운영계획 연간 자체평가보고서(Annual Report) 익년도 주요사업계획(예산편성 관련) 연도 교수채용계획(학과별, 분야별 채용계획) 및 최종 임용결과 신입생 선발정책 대학 발전기금 수증 결과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제10조 (보고사항)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(학사운영, 시설, 연구, 재정운영계획 등) 연간 운영계획 (삭제) (삭제) (삭제)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이사회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지침 변경 내용

현 행	변 경
제19조 (분과위원회 설치) 필요 시 <u>이사회의 의결을 거쳐</u> 이사회에 분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19조 (분과위원회 설치) 필요 시 <u>이사장은</u> 이사회에 분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부 칙 <u><신 설></u>	부 칙 <u>이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

마침.